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 경 만**

Q 업무상 사고 후 팀원들로부터 의 소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A 1. 사실관계

-1999년 3월 23일 내근직으로 발령되면서 사실상의 대기발령 형태로 고유 업무가 주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Mail ID , 책상 및 의자, 개인사물함 등이 회수된 사실

-상사가 창가에 서서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는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E-Mail을 통한 필수 업무전달로 인해 팀원들로부터 소외된 사실 등

2.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 상병의 원인은 생활변화와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에 임상적인 의미를 갖는 우울증상을 보였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우울증상의 발현이 생활사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장애 및 직장 내 기능수행의 저해가 있는 시기와 순응하는 바 있음.

-고대병원 정신과 교수의 소견 : 청구인의 갑작스런 보직변경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중증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유발될 수 있음.

3. 결 론

-청구인이 업무 또는 직장적응에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바 비록 대기발령 및 회사측에서 행한 일련의 사건들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유발된 정당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의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 '적응장애, 우울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 제 동**

Q 저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층 부분(근린생활시설)을 갑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갑은 원래 사무실로 사용되던 위 2층에 1천만원을 들여 보일러, 온돌방, 주방시설, 가스, 실내전등, 계단전기 등을 설치하고 삼계탕집을 경영하였는데, 위 시설물은 현재에도 약 8백만 정도의 가치가 남아있습니다. 임대차기간만료 후 제가 갑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하였더니, 갑은 저에게 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에게 8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갑이 시설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로는 우선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갑이 지출한 비용은 어디까지나 갑이 위 건물에서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지 건물의 보존을 위한다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고,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갑은 위 시설물을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병원장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 승 재

맥이 없을 때 ③

기를 보충해 주고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대표적인 약재는 인삼. 인삼은 체내의 모든 장기 조직에 큰 효과가 있어 지질, 단백질, DNA의 생합성을 활발하게 유도해 몸의 활력을 증강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심장 근육에 작용하여 심근의 수축력을 높여주므로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

하지만 몸이 허약해 졌다고 좋다는 약이면 녹용이니 인삼이니 닥치는 대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각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이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열성이 강한 보약을 먹어서는 안된다. 인삼, 녹용, 부자 등 더운 기운의 약을 함부로 먹으면 열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의 경우 고열이 있을 때 복용하면 갑자기 체온이 상승해 경기를 하거나 뇌막염이 올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보약이라고 다 같은 보약이 아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다라 자신의 증상과 체질에 맞게 지어먹어야 탈이 없다.

단순히 맥이 없다고 잘 먹고 잘 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대수롭지 않은 증상으로부터 큰 병이 시작되는 것이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곧 건강의 적신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자동차에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생기면 금새 정비공장으로 달려가고 온갖 정성을 다해 닦고 칠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에는 태만하지는 않은지….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운이 없다고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몸을 관리해 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꼭 몸이 아파야 마지못해 의료 기관을 찾는 습관보다는 예방 진료를 받고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건강 저축의 자세가 중요하다.

☞의정부한방병원(031-820-7200)
www.ujbhan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 문 환**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문제가 여성인권의 향상과 더불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남녀차별 금지법 등의 개정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희롱이 개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성희롱을 정의하자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개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사의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입니다.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보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합니다.

성을 매개로 한말이나 행동이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희롱의 시작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혀 성덕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제재대상으로서는 성희롱은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르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매우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외과 과장
오 준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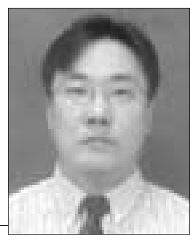

손이 저릴때 무엇이 문제인가?

환자분들은 손이 저리면 목 디스크인가? 하고 불안해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서 그런가보다 또는 풍이 아닐까하고 생각하면서 약국에서 임의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 드시거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60대 여성 환자 분들 중 이런저런 치료를 다해보고도 낫지 않아 의료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초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손이 저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실제로 손저림증의 90% 이상은 손목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각종 원인에 의해 눌려서 발생하는 수근관 증후군이 원인입니다.

집안 일을 많이 하시거나, 손으로 빨래를 하고 주방일을 많이 하는 가정주부들이나, 밭일과 같은 농사일등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근로자,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흔히 증상으로는 주로 밤에 증상이 더 심하며,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과 손바닥에 저린 증세가 나타나며, 드물게 팔꿈치나 어깨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여 목디스크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일하다가 손목을 흔들어 털면 조금 나아지고, 손을 주무르는 동작을 자주하게 되고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거나, 손끝의 감각둔화로 수저를 놓치는 일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진단은 손 저림증의 임상양상이나 손목의 정중신경부위를 타진시 증상이 발생하는 틴넬징후, 손목을 1분 정도 굴곡시 증상이 발생하는 팔렌검사 등이 나타나면 강력히 의심하고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보존적 요법으로 손목 휴식,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근관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등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신경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이 심한 경우는 수술치료를 시행하는데 손목부위 인대를 절개해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목디스크, 뇌졸중, 류머티스성 염증질환, 당뇨, 기타 내분비계질환시에도 손저림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세무사 **박 운 종**

Q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A법인의 건축공사를 하고 A법인으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여 지급기일에 은행에 제시하자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2005년 5월 31일이고 부도일은 6월 20일입니다.

A 거래처 부도로 손실이 발생되고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세법에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부가세법 제17조의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해 사업자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손 세액공제 요건은 위 대손 사유인 거래처의 파산·사망·어음부도·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당해 수취어음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와 부도확인이 된(은행의 부도방 날인) 어음의 앞·뒷면을 복사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대손의 사유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수표·어음의 원본을 제시받아 사본의 진위 여부와 매출과 관련된 것인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 받는 대손 세액은 대손 금액의 110분의 10이며, 소득세(법인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대손금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